



건설산업에서 계약공기와 품질 · 안전 동시성 관리 실패의 원인



신 봉 섭

- 협회 회원
- 기술사(건설안전, 건축시공)

건설경영의 7가지 요소기술은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기상.기후관리, 법규.규정 관리라 할 수 있다. 이 7가지 요소 기술은 상호 보완적이고 연계된 것으로서 그 무엇 하나가 실패 할 경우 다른 요소의 실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광주사고를 보면서 그것이 어찌 안전사고만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공정관리 실패를 만회하려다 즉 '공정관리 실패에 기인한 품질관리 실패'이며, 그것이 '안전사고로 종착' 되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는 인명사고가 났으니 안전사고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안전사고의 원인이 품질관리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서, 단순히 안전사고란 표현은 부족하고 '품질관리 실패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야 용어도 책임 한계도 분명해질듯 하다. 어쩌든 이런 사고는 공정관리 실패를 만회하려다 발생한 공정관리 실패에 기인한 품질관리 실패이며, 그것이 안전사고로 까지 전이 된 것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2에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과 조정 검토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정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공정관리에 실패하는 경우 지체상금(遲滯償金) 및 회사의 공신력 훼손 부담에 따른 돌관공사라는 유혹에 의해 원가관리가 실패하고, 급하게 서

두르는 공사관리로 품질관리가 잘될리 없으며, 안전관리 또한 위태로울 수 밖에 없고,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할 여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이런 관점에서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기술자들은 공정관리라는 숙제에 악전고투 중이다.

다만 건설사 또는 사업장의 기술자가 공기 여유와 상관없이 공기단축을 원가절감의 핵심 요소로 삼아 공기단축을 기술력의 척도인양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품질을 잃고 안전을 잃는 위험을 관행처럼 자초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특히 선 분양사업인 경우 입주 일정은 곧 계약공기이며 절대공기를 의미하고, 일반공사의 경우도 계약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공공공사일 경우라도 예외없이 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의거 매일 “일천분의 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물어낼 위기에 직면한다. 만일 공사계약금액이 300억일 경우 공기지연에 따라 매일 같이 3천만원을 물어주어야 할 형편이다. 3천만원을 벌어도 모자랄판에 매일 그렇게 까먹는다면 어느 사업주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뿐인가? 그간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투자한 비용이 얼마인데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건축주는 다시는 이 시공사에 공사를 발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관리에 실패할 경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기술자들은 공정만회를 위해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토록 외치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가 중심에 있을리 없다.

문제는 공정관리 실패를 유발하는 공기지연 사유가 너무나 심각하다. 첫째, 공기단축을 전제로 턱없이 부족한 계약공기를 요구하여 진행되는 공사계약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특히 유통시설물, 물류·냉동, 냉장창고 등 창고 시설물등에서 유난히 대형사고가 많은 것도 어쩌면 공기부족이 주 원인일 수 있고, 발주자는 투자 사업비 조기 회수라는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계약 공기를 요구하고, “을”인 입장의 시공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므로써 태생적으로 공사기간 부족이란 위험부담을 안고 출발한다. 계약공기 부족이라는 영업, 수주상의 리스크를 현장 기술자가 오롯이 감당해야하고 잘못되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관행은 기술자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제는 언강생심이고 주말, 휴일근무, 돌관공사, 일제식 용어인 야리끼리 작업 상황에서 품질 및 안전이 제대로 될리 없다.

둘째,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일수의 부족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동절기와 혹서기 기간은 증가하고 공사에 최적인 봄, 가을의 기간이 짧아지므로써 공사 일정관리 여건이 나빠지고 있으며, 거기다 폭설, 폭우, 혹서, 폭풍, 미세먼지 등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날은 줄어들고 있다. 천재지변에 대한 공기연장의 규정이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공기연장은 쉽지않은 일이다. 어느 건축주도 용납하려 들지 않고 그걸 아는 감리원 등이 이를 건축주에게 제안하려 들지 않는 상황에서 태생적으로 잘못된 계약공기에 의한 공정부진은 공정만회를 위해 무리한 공사진행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셋째, 부당 노동쟁의로 인한 노동일수 손실은 심각 지경에 이르렀다. 건설노조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근로자 권익, 건설재해예방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노조 활동은 경영권 간섭의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노조가 인력채용을 강요하거나 공사방해를 일삼으면서 작업장에서 장송곡을 울려대면 건설사업장의 분위기는 홀트러지고, 안전사고의 간접원인이 아니되리란 것도 없다. 채용간섭의 상황에서 원치않는 채용에 의한 사고 발생 책임은 누구에게 물려야 할지 의문이다. 거기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의 핵심이 되는 연속타설이 불가하게 하는 레미콘 노조활동인 8.5제의 시행으로 공기지연과 품질관리 실패가 우려되고, 타워크레인노조의 원치않는 운전원 채용 강요에 더하여 이를 등에 업은 운전원이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

넷째, 내국인 숙련기술인력의 부족과 단기 체류 외국인에 의존하는 생산구조가 생산성 저하에 의한 품질,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건설근로자 내국인력 부족 인원이 214,609명(수요 1,753,782명 공급 1,539,173명)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를 메꾸는 단기체류 미숙련 외국인에 의존하는 생산구조하에서 고품질, 안전확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생산품의 품질경쟁력은 고도의 숙련된 기능기술자가 고도화된 생산라인에서 계속작업을 하므로써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할 것인바, 건설산업의 경우 고도의 숙련된 기술인력도 고도화된 생산설비도 없이 고품질, 고 안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산업 고도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3D 업종 기피 현상은 기능인력뿐만 아니라 기술인력의 건설산업 진출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건설 기능기술 인력의 기술 이전은 단절되고,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이 자리를 위태롭게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숙련공 양성없이 단기체류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생산구조 하에서는 품질도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 건설 기능기술인의 우대를 바탕으로 하는 숙련공 양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건설산업의 앞날은 암울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기술인력의 무분별한 배출은 기술력의 저하와 더불어 정작 기술인의 건설업 진출을 기피하게 하는 역작용을 낳게 된다. 최근에 비전공자의 건설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로서 건설 비전공자라도 학원 등에서 단 하루 이틀만의 교육만으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일정의 경력을 쌓으면 초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기능기술인이 아니라 기술자가 될 수 있고 산업기사 과정 양성교육을 받을 경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여 바로 초급 기술자가 될 수도 있다. 전공 고등교육 및 전문대학 과정 전공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부처별 정책 중에서도 국가 기술자력에 더하여 사례로 고용노동부의 경우 전문자격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의 한 예를보면 이 자격증의 경우 건설안전 관련 경력이나, 전공 여부와 같은 시험 응시자격의 특별한 제약없이 누구나 응시하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임에도 고용노동부의 건설안전 정책 속에서 건설관련 전공 이력과 경력을 요구하여 어렵게 응시하게 되는 국가기술자격인 건설안전기술사를 능가하는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전공과 경력을 가진 기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

닐 수 없다. 기술자 우대정책은 커녕 사기를 꺾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고질적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수주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저가 생산구조를 만들어내고, 생산성 저하를 낳고 있다. 저가 수주 및 저가 생산 상황에서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는 같은 양질의 생산 현장 즉 양질의 가설구조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의한 건설 생산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공정지연과 이에 따른 품질 및 안전의 실패는 불가피하다. 사례적으로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하여 전문업체에게 일괄 하도급하거나, 소위 실행소장을 통해 일정의 공사 이익과 수수료만을 챙기는 관행은 하루속히 척결되어야 한다.

적정공사비 확보에 더하여 적정 공사기간의 확보는 앞서 언급한 건설기술진흥법의 “공사기간의 산정기준”과 더불어 국토부 훈령 “공공공사 종류별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국가계약법의 “공사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중 불가항력에 미세먼지 추가”와 국가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공공건설공사 입찰공고에 공사기간 산출근거 제시”, 주택법에서의 “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제도” 및 “설계변경 요청제도” 등이 도입되거나 도입 추진 중에 있고,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및 공사비 적정성 심사”를 받을 의무를 부여할 예정으로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의 실행성을 배가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며,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를 포함하여 공사계약시 현장 실무진 중심의 심의기구 등을 통해 적정 공사기간 산출과 적용이 현실화되고, 앞서 언급한 공정관리를 제약하는 여러 조건들을 이유로 하는 공사기간의 연장이 당연히 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이 조속히 도입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